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4. 12. 28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 11. 21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4. 11. 24

다. 상 정 일 자 : 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4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94. 12. 22) 상정

제5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94. 12. 2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소과장 김 방 옥)

가. 제안이유

'93. 12. 27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91. 4. 16 이후 동결되어 온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적정히 상향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나. 주요골자

○지역별 정화조 청소를 강화하여 청소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

- 지역별 청소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상가 등 지역특성에 따라 일부를 제외할 수 있게 함.(안 제3조 제3항)

- 지역별 청소의 미참여시설에 대하여 할증료를 가산함으로써 지역별 청소를 정착화시키고, 이에 따른 능률향상으로 수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8조 제2항)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조정함.

- '91년 4월 이후 동결된 수수료를 인상함(안 제8조 제1항 별표 2)

- 분뇨수집·운반수수료 : 18ℓ 267원 → 10ℓ당 200원

- 정화조청소 수수료 — 기본(0.75㎡당) 14,725원 → 16,200원

— 초과(0.1㎡당) 1,040→1,170원

— 할증(신설) 기본 및 초과수수료의 5%

○법 개정에 따른 내용 조정

- 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한을 정하지 아니함 (안 제15조 제3항)

○기타 현행조례 개선

- 처리수수료 대행정수 교부금의 지급을 의무화함(안 제12조)
- 규칙에 대한 위임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역별 정화조 청소를 강화하여 청소의 능률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은 종전에는 임의규정을 개정조례에서는 강행 규정으로 정하여 각 정화조는 연 1회 청소 체제가 확립되어 누락, 지연 청소에 방과 수집운반 시간의 단축 및 교통유발 감소, 주민불편 해소 등 골목별 청소제 실시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91. 4. 16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그동안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수거종사원의 불만과 수거업체의 경영난이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하는 것이나 고지대 영세주민 등 주민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분뇨수집 운반과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91년 4월 이후 청소 수수료를 동결함에 따라 대행업체 수거 종사원 임금인상 억제로 저임금에 따른 불만과 분뇨처리의 적시성의 담보로 파업이 우려되고, 인건비 등에 따른 제반 경비의 증가로 수거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함.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률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결정되었는지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정화조 청소업의 경우는 '92, '93년 물가상승률 11. 8%인상. 분뇨수집 운반업은 물가상승률과 91년 인상보류분을 합하여 35%의 인상 결정된 것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사하구의 경우 위생처리자의 거리가 가까워 타구와 비교하여 다른 구보다 여건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동물로 인상하는 이유는	여건은 타구와 비교하여 다소 나은 면도 있으나 지금까지 시 전역에 동일요금 체제로 유지해 왔고, 구별로 요금이 상이한 경우 민원이 예상되고 위생처리장 반입 수수료가 '95. 1. 1부터 10% 인상되므로 각구 동물의 수수료 인상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